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56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소희·박덕흠·김기현
이현승·김상훈·김기웅
우재준·유용원·최수진
엄태영·김예지·조승환
조배숙·김승수·강명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약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행법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2조, 제58조, 제10장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후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19.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8조제1항 중 “재원”을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장의2(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제74조의2(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
4.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74조의3에 따른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4조의3(기후금융 촉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촉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후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

⑦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4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의6(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채권과 관련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 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9(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7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기후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가. <u>「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u> 나. <u>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u> 다. <u>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u> 라.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신 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하는 활동

19.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

-----.

②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제74조의2(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 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신 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

4.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국제 협력

5. 그 밖에 기후금융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74조의3에 따른 기후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기후금융 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으로 기후금융 추진위원회(이

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촉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후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신 설>

한다)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

⑦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4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

<신 설>

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의6(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제1항의 채권과 관
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
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
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만 유효하다.

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
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
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

<u><신 설></u>	<u>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제74조의9(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7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